|  |  |  |
| --- | --- | --- |
| **2.3.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시범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  發改價格 [2006] 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전력회사, 국가전력망회사, 남방 전력망회사: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당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發電)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시범방법》을 제정하여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의 문제는 지체 없이 당 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란다.  붙임: 《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시범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6년 1월 4일  붙임:  **재생에너지 발전가격 및 비용분담 관리**  **임시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 발전(發電)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과 《가격법》에 의거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농임 폐기물의 직접 연소와 기화 발전, 쓰레기소각 및 쓰레기매립장 기체 발전, 메탄가스 발전 포함), 태양에너지 발전, 해양에너지 발전 및 지열에너지 발전에 적용한다. 수력 발전가격은 당분간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로서 2006년 및 그 이후 정부 주관부서로부터 건설 허가 또는 인가를 득한 경우 이 방법을 집행하며, 2005년 12월 31일 전에 정부 주관부서로부터 건설 허가 또는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여전히 현행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제4조** 재생에너지 발전가격과 비용분담 기준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규율하고 공평하게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5조**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은 정부의 정가와 정부의 지도가격 2가지 형식을 실시한다. 입찰을 통해 확정된 낙찰가격이 바로 정부의 지도가격으로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당지 탈황석탄 화력발전유닛의 전력망 접속 기준가격보다 높은 차액부분은 전국 성급 및 그 이상 전력망의 소매전력에 분담시킨다.  **제2장 전기가격의 제정**  **제6조**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은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며, 그 전기가격의 기준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입찰에 의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확정한다.  **제7조** 바이오매스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지역별로 기준 전기가격을 정하며, 그 기준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2005년 탈황석탄 화력발전유닛의 전력망 접속 기준가격에 전기가격 보조를 합한 가격으로 구성한다.  전기가격의 보조기준은 킬로와트/시 당 0.25위안으로 한다. 발전프로젝트는 생산에 투입된 날로부터 15년 내에 보조 전기가격을 적용하며, 만 15년 운행 후에는 전기가격 보조를 취소한다.  2010년부터 매년 건설하는 신규 허가 또는 인가한 발전프로젝트의 보조 전기가격은 그 전년도의 신규 허가 또는 인가한 건설프로젝트의 보조 전기가격에서 20% 체감한다.  전력 생산에 소모한 열량 중 일반 에너지가 20%를 초과하는 혼탄 화력발전프로젝트는 일반에너지 발전프로젝트로 간주하여 당지 석탄 화력발전소의 기준 전기가격을 집행하며, 보조 전기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입찰을 통해 투자자를 확정한 바이오매스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은 정부 지도가격, 즉 낙찰 가격을 집행하되 소재지역의 기준 전기가격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 태양에너지 발전, 해양에너지 발전 및 지열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은 정부 정가를 실시하며, 그 전기가격의 기준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합리적인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합하는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제10조**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의 사용자 소매 전기가격은 당지 성급 전력망의 분류에 따라 각이한 소매 전기가격을 집행한다.  **제11조** 전력 사용자가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 전기가격은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에 전력망 접속 평균 송전가격을 합한 가격을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비용 지불과 분담**  **제12조**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이 당지 탈황석탄 화력발전유닛의 전력망 접속 전기가격을 초과한 부분, 국가의 투자 또는 보조에 의해 건설한 공공 재생에너지의 독립 전력시스템의 운행 유지보수 비용이 당지 성급 전력망의 평균 소매 전기가격을 초과한 부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비용 등은 전력 사용자로부터 전기가격 부가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는 성급 및 그 이상 전력망 운영기업 서비스 범위 내의 전력사용자(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의 도매대상, 자체 발전소 이용자, 발전소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사용자 포함)로부터 수취할 수 있다. 지방, 현의 자체 공급 전력망, 티베트 지역, 그리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전력 사용자에 대해서는 잠시 면제한다.  **제14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는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책정하고 전력 사용자의 실제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수취하며, 전국 범위에서 통일 기준을 실시한다.  **제15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 =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 총액 / 전국의 할증 소매 전기량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 총액 = Σ〔（재생에너지 발전가격 - 당지 성급 전력망 탈황석탄 화력발전유닛의 기준 전기가격) × 전력망 운영기업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기량 +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전력시스템의 운행 유지비용  - 당지 성급 전력망의 평균 소매 전기가격 ×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의 소매 전기량) +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그중,  (1) 전국의 할증 소매 전기량 = 계획 기간 내에 전국의 성급 및 그 이상 전력망 운영기업이 소매한 총 전기량 - 농업 생산에 사용한 전기량 - 티베트전력망의 소매 전기량  (2) 전력망 운영기업이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기량 = 계획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 공장의 사용 전기량  (3)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운행 유지비용 = 공공 재생에너지 독립 전력시스템 운영원가 × (1 + 부가가치세 세율)  (4)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란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시스템 접속을 위해 특별히 발생한 공사투자와 운행 유지비용을 가리키며, 동 비용은 정부 유관부서가 승인한 설계서류에 의거한다. 국가가 송전 및 배전 원가를 명확히 규정하기 전에는 잠시 접속 비용을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에 계상하여 채산한다.  **제16조**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의 할증 소매 전기량이 전국 전력망의 할증 소매 전기량에서 점한 비율에 따라 각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이 분담할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액을 확정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각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이 분담할 전기가격 부가 = 전국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 총액 ×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 서비스범위 내의 할증 소매 전기량 / 전국의 할증 소매 전기량  **제17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는 전력망 운영기업의 소매 전기가격에 계상하여 전력망 운영기업이 수취하고 단독으로 기장하며 전문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되는 조세 혜택정책은 국무원이 규정한 구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는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실제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조정하며, 조정기간은 최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 각 성급 전력망 운영기업이 실제 지불한 전기료 보조금 및 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의 전력망 접속 비용과 그가 분담해야 할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부가의 차액은 전국 범위 내에서 통일적으로 관리, 사용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 전력감독관리부서가 이 방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제4장 부 칙**  **제20조** 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전력망 운영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망 접속 거래전기량, 가격과 금액 등 관련 자료를 진실하고 완벽하게 기재하고 보관해야 하며, 아울러 가격주관부서, 전력감독관리기구 및 감사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이 방법이 규정한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아 기업과 국가이익에 손실을 입힌 경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 전력감독관리기구 및 감사부서는 심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주요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  |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  **可再生能源发电价格和费用分摊**  **管理试行办法》的通知**  （发改价格[2006]7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发展改革委、物价局、电力公司，国家电网公司、南方电网公司：  　　为促进可再生能源的开发利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我委研究制定了《可再生能源发电价格和费用分摊管理试行办法》，现印发你们，请按照执行。对执行中出现问题，请及时报告我委。  　　附件：《可再生能源发电价格和费用分摊管理试行办法》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二00六年一月四日  　　附件：  **可再生能源发电价格和费用分摊管理**  **试行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促进可再生能源发电产业的发展，依据《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和《价格法》，特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的适用范围为：风力发电、生物质发电(包括农林废弃物直接燃烧和气化发电、垃圾焚烧和垃圾填埋气发电、沼气发电)、太阳能发电、海洋能发电和地热能发电。水力发电价格暂按现行规定执行。  **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可再生能源发电项目，2006年及以后获得政府主管部门批准或核准建设的，执行本办法；2005年12月31日前获得政府主管部门批准或核准建设的，仍执行现行有关规定。  **第四条** 可再生能源发电价格和费用分摊标准本着促进发展、提高效率、规范管理、公平负担的原则制定。  **第五条** 可再能源发电价格实行政府定价和政府指导价两种形式。政府指导价即通过招标确定的中标价格。  可再生能源发电价格高于当地脱硫燃煤机组标杆上网电价的差额部分，在全国省级及以上电网销售电量中分摊。  **第二章 电价制定**  **第六条** 风力发电项目的上网电价实行政府指导价，电价标准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按照招标形成的价格确定。  **第七条** 生物质发电项目上网电价实行政府定价的，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分地区制定标杆电价，电价标准由各省(自治区、直辖市)2005年脱硫燃煤机组标杆上网电价加补贴电价组成。  补贴电价标准为每千瓦时0·25元。发电项目自投产之日起，15年内享受补贴电价；运行满15年后，取消补贴电价。  自2010年起，每年新批准和核准建设的发电项目的补贴电价比上一年新批准和核准建设项目的补贴电价递减2%。  发电消耗热量中常规能源超过20%的混燃发电项目，视同常规能源发电项目，执行当地燃煤电厂的标杆电价，不享受补贴电价。  **第八条** 通过招标确定投资人的生物质发电项目，上网电价实行政府指导价，即按中标确定的价格执行，但不得高于所在地区的标杆电价。  **第九条** 太阳能发电、海洋能发电和地热能发电项目上网电价实行政府定价，其电价标准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按照合理成本加合理利润的原则制定。  **第十条** 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对用户的销售电价执行当地省级电网的分类销售电价。  **第十一条** 鼓励电力用户自愿购买可再生能源电量，电价按可再生能源发电价格加上电网平均输配电价执行。  **第三章 费用支付和分摊**  **第十二条** 可再生能源发电项目上网电价高于当地脱硫燃煤机组标杆上网电价的部分、国家投资或补贴建设的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运行维护费用高于当地省级电网平均销售电价的部分，以及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网费用等，通过向电力用户征收电价附加的方式解决。  **第十三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向省级及以上电网企业服务范围内的电力用户(包括省网公司的趸售对象、自备电厂用户、向发电厂直接购电的大用户)收取。地县自供电网、西藏地区以及从事农业生产的电力用户暂时免收。  **第十四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核定，按电力用户实际使用的电量计收，全国实行统一标准。  **第十五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计算公式为：  可再生能源电价附加＝可再生能源电价附加总额/全国加价销售电量  可再生能源电价附加总额＝Σ〔(可再生能源发电价格-当地省级电钢脱硫燃煤机组标杆电价)×电网购可再生能源电量+(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运行维护费用-当地省级电网平均销售电价×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售电量)+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网费用以及其他合理费用〕其中：  (1)全国加价销售电量＝规划期内全国省级及以上电网企业售电总量-农业生产用电量-西藏电网售电量。  (2)电网购可再生能源电量＝规划的可再生能源发电量-厂用电量。  (3)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运行维护费用＝公共可再生能源独立电力系统经营成本×(1+增值税率)。  (4)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网费用以及其他合理费用，是指专为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入电网系统而发生的工程投资和运行维护费用，以政府有关部门批准的设计文件为依据。在国家未明确输配电成本前，暂将接入费用纳入可再生能源电价附加中计算。  **第十六条** 按照省级电网企业加价销售电量占全国电网加价销售电量的比例，确定各省级电网企业应分摊的可再生能源电价附加额。计算公式为：  各省级电网企业应分摊的电价附加额＝全国可再生能源电价附加总额×省级电网企业服务范围内的加价售电量/全国加价销售电量  **第十七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计入电网企业销售电价，由电网企业收取，单独记账，专款专用。所涉及的税收优惠政策，按国务院规定的具体办法执行。  **第十八条** 可再生能源电价附加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根据可再生能源发展的实际情况适时调整，调整周期不少于一年。  **第十九条** 各省级电网企业实际支付的补贴电费以及发生的可再生能源发电项目接网费用，与其应分摊的可再生能源电价附加额的差额，在全国范围内实行统一调配。具体管理办法由国家电力监管部门根据本办法制定，报国务院价格主管部门核批。  **第四章 附 则**  **第二十条** 可再生能源发电企业和电网企业必须真实、完整地记载和保存可再生能源发电上网交易电量、价格和金额等有关资料，并接受价格主管部门、电力监管机构及审计部门的检查和监督。  **第二十一条** 不执行本办法的有关规定，对企业和国家利益造成损失的，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电力监管机构及审计部门进行审查，并追究主要责任人的责任。  **第二十二条** 本办法自2006年1月1日起执行。  **第二十三条** 本办法由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负责解释。 |